

□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7(적합성평가의 면제)제1항 [별표 6의2]

1. 법 제58조의3 제1항제1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

바.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산업체 등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는 수량

사 유 서

※담당자 및 연락처

1. 기자재 개요

가. 기자재 명칭 :

나. 모델명 :

다. 수 량 :

라. 외관도(사진, 도면 등 현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)



2. 주요 내용 ※구체적으로 작성 요망

가. 반입 목적 :

나. 기자재 용도 :

다. 사용 장소 및 기간 :

라. 사용 후 반출 계획 :

20

“회사 명판 또는 서명, 직인 등”

※ 주의사항 :

1. 면제신청 기자재는 해당 요건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사후관리 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면제 요건의 목적 외 사용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. 면제 승인 후, 사후 처리에 대한 이행신고는 의무사항 이오니 안내문(배너)을 참고 바랍니다.